

- 2024년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

방역·소독 용역 과업지시서

(실내외 소독 및 구서)

2024. 02.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방역·소독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하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노원구민의전당 외 8개소) 내 쥐, 해충 구제 및 살균 소독으로 각종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시설물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용역명: 2024년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방역·소독 용역

나. 용역대상: 노원구시설관리공단(노원구민의전당 외 8개소)

연번	사업장	주소	규모
1	노원구민의전당	노원구 동일로 1229	4,009㎡
	과업범위	- 건물 전체 ※ 2024년 하반기 사무동 리모델링 시 사무동 제외한 1,867㎡	
2	초안산캠핑장	노원구 마들로5길 89-27	365㎡
	과업범위	-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및 샤워실, 캐빈하우스, 출입초소, 분리수거장	
3	상계구민체육센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748	3,809㎡
	과업범위	- 건물전체(지상1층 공동육아방 및 2층 아이휴센터 제외)	
4	중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 노원로22길 1	5,857㎡
	과업범위	- 건물 전체(2024년 10월 이후 리모델링 예정)	
5	월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 월계로298	7,999㎡
	과업범위	- 건물 전체(단, 지하 주차장 구획 제외)	
6	초안산스포츠타운	노원구 마들로 5가길	1,463㎡
	과업범위	- 실내 배드민턴장, 화장실 건물	
7	불암산스포츠타운	노원구 중계로36	1,543㎡
	과업범위	- 건물 전체(단, 주차장 구획 제외)	
8	당고개배드민턴장	노원구 상계동113-2	970.4㎡
	과업범위	- 건물 전체	
9	수락산스포츠타운	노원구 수락산로8길 39	198㎡
	과업범위	- 관리사무소 건물 전체	
합 계			26,213.4㎡

※ 용역대상 과업범위에 한하여 방역소독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약범위와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장 리모델링 등 사유로 인하여 계약 규모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 비례하여 감액 예정

※ 공단 사업장 위수탁 종료 등 사유로 용역의 범위 및 과업 등 계약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4.12.31.(사업장별 월 1회)

※ 단, 중계구민체육센터는 착수일로부터 9개월을 용역기간으로 함

※ 단, 2월 중 계약 체결 및 착수 시 2월 내 사업장별 1회 방역 필수

3. 과업범위

가. 본 용역계약의 과업범위는 과업지시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및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공단 운영 사업장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내·외부 방역 소독 및 구서 작업
 - 가) 직원 및 이용자의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소독, 살균, 살충제 약품 사용
 - 나) 사업장별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소독방역, 구서, 구충 등의 방역작업 실시

4. 일반수칙

가.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공단 과업지시서에 따른 정당한 공단의 요구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장별 배수펌프 시설, 배수로 기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특별히 집중 시행(작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공단 시설물 및 장비 일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장비의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역소독 용역 시행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각 사업장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업 지시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마.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방역소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용역횟수를 축소하거나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공단의 각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 후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 단, 사업장 리모델링 또는 위수탁 증감 상황 등 사유에 따라 용역의 범위, 과업내용 및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구분	노원구민의전당 사무동	중계구민체육센터	비고
시기	2024년 하반기 리모델링 예정	2024년 하반기 리모델링 예정 (2024.10월 이후 예정)	○ 리모델링 시 방역 면적 일할 (구민의전당) 및 방역소독비 미지급 (중계구민체육센터)
규모	리모델링 시 1,867㎡ 방역 (리모델링 전 4,009㎡)	리모델링 시 방역 제외	

※ 중계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지연에 따라 용역 기간 종료 이후 방역 필요 시 기존 계약금액으로 2024년 중 방역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인원기준 및 작업방법

가. 인원기준

-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방역소독 시 2인(조장1인, 보조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 운영 사업장 내 여성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방역 소독을 위하여 여성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장별 감독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 운영 종료 후 또는 휴일에 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방역소독 용역 수행 시 반드시 소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전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일시

- 본 용역 계약에 따른 방역 소독(구서 포함)은 사업장별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일자 및 작업시간은 각 사업장별 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협의 후 조정 실시한다. 단, 각 사업장별 감독자는 사업장 운영 특성에 따라 사업장에 이용인원이 없는 시간(사업장 운영 종료 후인 야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방역 소독을 요청할 수 있고 방역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사용약품 및 장비

- 계약상대자는 방역 소독(구서 포함)에 사용하는 모든 약제(약품)와 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살균·살충제

- 환경부로부터 방역용 살생물제로 인가된 성분을 사용한 약제를 사용할 것
- 인체 및 식물에 잔류약해, 환경호르몬 등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안정성이 높은) 약제를 사용하며, 악취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 사업장 감독자로부터 악취 등 사유로 약품을 교체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물과의 희석비율, m²당 희석액 살포량을 정확히 준수하여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해 및 과소사용으로 인한 소독효과 감소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

2) 구서제, 구충제

- 사람에게 피해가 없고 2차 독성이 없는 약제를 사용할 것
-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쥐나 해충의 이동 통로에 설치할 것

3) 장비

-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기준)에 의거하여 분무기, 위생 안전모, 보호 안경, 보호의 등을 미리 확보하여 소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충기

- 포충기를 사용할 경우 규격에 맞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포집된 벌레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용역 수행에 사용할 사용 약품의 이름, 성분명, 효과, 부작용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재된 보고서와 약품의 물질안전보건(MSDS)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품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라. 작업방법

1) 작업 전 준비

-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사업장별 감독자에게 방역 소독 시 작업 내용 및 방법, 약품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방역업체는 관계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상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 작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직원 및 이용자들이 방역 소독 작업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복장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의 실시

구분	실내방역(소독)	실외방역(소독)	구서작업
대상 및 목적	○ 대상 -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위생관리해충 ○ 목적 - 외부해충의 유입방지 및 퇴치	○ 대상 - 법적 위생관리해충 ○ 목적 - 실외 서식 해충의 종류, 서식지 및 산란지를 확인을 통한 해충의 퇴치	○ 대상 - 쥐 및 바퀴벌레 등 실내로 유입가능한 모든 보행성 해충 ○ 목적 - 건물 내 유입 및 산란, 서식 차단
내용	1) 분무살포 - 실내 살균, 살충 방역 · 분무 방법: 분무기를 이용한 미립자 잔류 분무 (희석액 분출 1입자의 크기 : 100~400마이크론 이하) · 거리: 벽면과 노즐 팁과의 거리는 50cm로 일정하게 유지 · 분무 속도 : 분당 19m ² 의 면적을 살포하는 정도의 속도로 잔류량이 일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작업 방법 :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시 · 노즐팁 : m ² 당 40cc 정도가 분무되는 수준의 노즐팁 사용 · 약효 지속기간: 1개월 이상	2) 과립, 분무살포 - 실외 구서(쥐), 구충 방역 · 쥐, 바퀴벌레 등의 종류, 서식처, 통로, 행동 범위, 침입로 등을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서, 구충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 실시 · 사업장 주요 출입구, 하수구, 배수구 등 해충 서식이 예상되는 곳에 구서트랩 설치, 분무 방역을 실시 · 죽은 쥐나 해충의 사체를 수거 조사하고 발견된 쥐의 침입구, 서식처 등을 차단하여 쥐의 활동 및 재침입을 방지 · 사체 발견 시에는 수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공통	○ 필요에 따라 사업장별 감독자와 협의 후 약제 및 사용 농도 등을 적절히 변경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관계부처의 규제 지침 사용상 주의사항 및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 후 확인

-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사업장별 각 담당자에게 작업 완료를 보고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내용을 점검한다.
- 계약상대자는 누락된 구역 또는 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 완료 이후에 방역 효과 미비 등 사유로 공단 사업장별 담당자가 재소독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효과 검증에 대한 자료를 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독 증명서(별지 제28호 서식), 기타 관련 법령 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자 관리 및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단 시설의 환경, 업무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업체가 모든 법률상 문제를 포함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용역 업무 수행 근무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력의 적음을 이유로 방역 업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작업자는 깨끗하고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며, 작업 시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안전모, 마스크, 장갑, 방제장비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한다.
- 작업 중 음주·흡연은 일절 금한다.
- 소독약품의 성능을 확실히 숙지하여 약품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자세히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방역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요령을 작업 전에 숙지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작업요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방역소독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또는 기물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후 날짜를 지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방역 소독 진행 중 제반사항은 공단 측과 협의하고,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공단 측의 의견을 우선하여 지시에 따른다.
- 다. 본 과업지시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공단 측의 지시에 따른다.
- 라.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 마. 계약상대자는 소독업 신고증 및 계약이행증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서류를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은 시설물의 방역소독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역 업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 바. 방역소독 작업 시 각 사업장(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성실한

자세로 위생소독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역요원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 방역소독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약품, 램프, 끈끈이, 쥐트랩 등)은 방역 업체에서 직접 준비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 측에 요구해서는 안된다.
- 아. COVID-19 외 중대한 전염병 발생 시 관련법 상 소독횟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방제를 대상에 대한 특별작업으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자. 고소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장비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정비는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방역 업체는 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카. 계약상대자는 방역소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종업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그 종업원에 대하여 방역소독 업무수행 상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통하여 교체할 수 있다.
- 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대금 지급 및 제출서류

가. 대금지급

-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 계약 체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작업 시행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월 말까지 제출하고 공단은 익월 10일까지 대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출서류

연번	내용	비고
1	사용약품 보고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 최초 계약시 및 사용약품 변경 시 제출 필수 · 과업지시서 5.인원기준 및 작업방법 다. 사용약품 및 장비 참조
2	소독증명서[별표1]	· 매월 방역소독 시행 후 각 사업장별 소독증명서 원본 제출 및 공단 관계자에게 이메일 사본 제출 ※ 노원구 보건소 및 기타 제출 필요 관계기관 신고(제출) 업무 포함
3	작업 사진대지[별표2]	· 매월 방역소독 시행 후 공단 관계자에게 이메일 제출
4	방역 결과보고서	· 매월 방역소독 시행 후 공단 관계자에게 이메일 제출 (장비, 약품, 공간별 방역방법, 실시인력 등 포함 필수)
5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서류	· 요청 시 제출

8. 금지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단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2)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 3) 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4)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 5)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및 설비현황의 외부 누설행위
- 6) 작업장 내에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 7)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8) 계약에 명시된 공단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9) 기타 공단이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

9. 화재예방

- 가. 계약상대자는 화재가 인명 및 재산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건물소독 전 작업자에게 충분한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10. 계약의 해지

- 가.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 1) 계약상대자가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제8항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과업지시서 및 기타 일체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소기의 계약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나. 공단과 계약상대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1.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방역소독 업무를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12. 내용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과 방역 업체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소독증명서

제 호

소독증명서

대상 시설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m ² (m ³)
	소재지		
	관리(운영)자 확인	직위	성명 (인)
소독기간	~		
소독 내용	종류		
	약품 사용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별표2]

2024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방역소독용역 사진대지

시 설 명:

작업일시:

작업자:

작업사진	